

# 일본, 식육기본법(食育基本法) 개요

정은미\*

일본은 ‘식육기본법’을 2005년 6월 10일 제정하여 같은 해 7월 15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식육기본법’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법률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듯이 인간이 하루라도 거를 수 없는 먹거리를 둘러싸고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은 개인 문제 아니라 국가 사회 전체의 문제로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인식이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 국민운동으로서 식교육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법률이 제정되었다.

식육기본법은 전문과 33조항,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과 주요 조항을 소개한다.

## 1. 전문

21세기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린이가 건강한 심신을 기르고 미래와 국제사회를 향해 날개를 활짝 펼 수 있게 하며, 모든 국민이 심신의 건강을 확보하고 생애에 걸쳐 활발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린이가 온화한 인간성을 기르고 살아갈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먹거리(食)’가 중요하다. 이제 새롭게 살아가는데 기본인 식교육을 지식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jeongem@krei.re.kr 02-3299-4311

교육(知育), 인격교육(德育), 체육(體育)의 기초로 인식하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먹거리’에 관한 지식과 ‘먹거리’를 선택하는 능력을 습득하고 건전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인간을 기르는 식교육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원래 식교육은 모든 세대의 국민에게 필요하지만 특히 어린이에게 식교육은 심신의 성장 및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생애에 걸쳐 건전한 몸과 마음을 기르고 온화한 인간성을 기르는 기초가 된다.

한편, 사회경제 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바쁜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매일 먹는 ‘먹거리’의 중요함을 잊기 쉽다. 국민 식생활에는 영양 편중, 불규칙한 식사, 비만이나 생활관습병 증가, 과도한 지방 등 문제와 함께 새롭게 ‘먹거리’의 안전 문제나 ‘먹거리’의 해외 의존 문제가 발생하고 ‘먹거리’에 관한 정보가 사회에 범람하면서 사람들은 식생활 개선이나 ‘먹거리’의 안전 확보보다 ‘먹거리’가 원래 지향하는 내용을 스스로 배워야 한다. 또한 풍부한 숲과 맑은 물 등 자연에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지역의 다양성과 풍부한 미각, 문화의 향기 넘치는 일본의 ‘먹거리’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

‘먹거리’를 둘러싼 환경이 변하는 가운데 국민의 ‘먹거리’에 관한 사고방식을 기르고 건전한 식생활 실현이 요구되면서 도시와 농산어촌의 공생·교류가 진행되고 ‘먹거리’에 관한 소비자와 생산자의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지역 사회 활성화, 풍부한 식문화 계승 및 발전, 환경과 조화로운 식료 생산 및 소비 추진, 나아가 식료자급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먹거리’에 대해 새롭게 의식을 바꾸고 자연의 은혜와 ‘먹거리’에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의 활동에 감사하고 이해하면서 심신의 건강을 증진하는 건전한 식생활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정, 학교, 보육원, 지역을 중심으로 국민운동 차원에서 식교육을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과제이다. 나아가 식교육 추진에 관한 우리의 움직임이 해외 교류를 통해 식교육에 관해 국제적 공헌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이에 식교육에 대해서 기본이념을 분명히 밝히고 그 방향성을 제시하며, 국가, 지방공공단체 및 국민의 식교육 추진에 관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 법률을 제정한다.

## 2. 총칙

### 2.1. 목적(제1조)

이 법률은 최근 국민 식생활을 둘러싼 환경변화에 따라 국민이 생애에 걸쳐 건전한 심신과 온화한 인간성을 기르기 위해서 식교육 추진이 긴급한 과제임을 인식하여 식교육에 관한 기본이념을 정하고, 또한 국가, 지방공공단체의 책무를 분명히 하고 식교육에 관한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식교육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현재 및 장래에 건강하고 문화적인 국민 생활과 온화하고 활력있는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2.2. 식교육에 관한 기본 이념(제2~8조)

국민 심신 건강 증진과 온화한 인간 형성(제2조), 먹거리에 관한 감사의 마음과 이해(제3조), 식교육 추진운동 전개(제4조), 어린이 식교육에서 보호자·교육관계자의 역할(제5조), 먹거리에 관한 체험활동과 식교육 추진활동 실천(제6조), 전통적인 식문화, 환경과 조화된 생산 배려 및 농산어촌 활성화와 식료자급률 향상에 공헌(제7조), 식품 안전성 확보에 식교육의 역할(제8조)

### 2.3. 식품 안전성 확보에서 식교육의 역할(제8조)

식교육은 식품 안전성이 확보되고 안심하며 소비할 수 있는 것이 건전한 식생활의 기초임을 인식하고 식품 안전성을 비롯한 먹거리에 관한 폭넓은 정보 제공 및 그에 대한 의견교환이 먹거리에 관한 지식과 이해를 높여 국민에게 적절한 식생활 실천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서 국제적인 연계를 도모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2.4. 관련자의 책임과 의무(제9~13조)

국가(제9조) : 식교육에 관한 기본이념(이하 기본이념)에 근거하여 식육 추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책정하고 실시함.

지방자치단체(제10조) : 기본이념에 근거하여 식교육 추진에 관해 국가와 연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 구역의 특성을 살린 자주적인 시책을 책정하고 실시함.

교육관계자 및 농림어업자(제11조) : 교육 및 보육, 간호 등 사회복지, 의료 및 보건의 종사하는 자나 교육 관계기관이나 단체는 먹거리의 관심과 이해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모든 기회와 모든 장소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식교육을 추진하며 다른 식교육 추진 활동에 협력하도록 노력함. 농림어업자나 단체는 농림어업에 관한 체험활동이 먹거리에 관한 국민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음을 고려하여 농림어업에 관해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자연의 은혜와 먹거리 생산에 관련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얻도록 하며 교육관계자와 서로 연계하여 식교육 추진 활동에 노력함.

식품관련 사업자(제12조) : 식품 제조, 가공, 유통, 판매,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 및 조직단체는 사업활동에 관해 자주적이고 적극적으로 식교육 추진에 스스로 노력하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식교육 추진 시책, 그 밖의 식교육 활동에 협력하도록 노력함.

국민(제13조) : 국민은 가정, 학교, 보육소, 지역, 기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생애에 걸쳐 건전한 식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식교육 추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함.

## 2.5. 식교육 추진 기본계획(제16~18조)

식육추진회의는 식교육 추진 기본계획을 작성(제16조)하고 도도부현(都道

府縣)과 시정촌(市町村)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해당구역 내에서 식육 추진에 관한 시책에 대해서 계획을 작성하도록 노력하며 각 해당 구역에 식육추진회의는 해당 구역의 식교육 추진계획을 작성하고 공표함.

## 2.6. 기본적 시책(제19~25조)

가정에서 식교육 추진(제19조), 학교, 보육소에서 식교육 추진(제20조), 지역에서 식생활 개선 추진(제21조), 식교육 추진운동 전개(제22조),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 촉진, 환경과 조화된 농림어업 활성화(제23조), 식문화 계승을 위한 활동 지원(제24조), 식품 안전성, 영양, 기타 식생활에 관한 조사, 연구, 정보 제공 및 국제 교류 추진(제25조)

## 2.7. 식육추진회의(제26~33조)

내각부에 식교육추진회의를 두고 다음과 같은 사무를 수행한다(제26조).

첫째, 식교육 추진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추진할 것. 둘째, 식교육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식교육 추진에 관한 시책 실시를 추진할 것.

식육추진회의는 회장 및 위원 25인 이내로 조직하며(제27조) 회장은 내각총리대신이 역임한다(제28조).

도도부현과 시정촌에 식육추진회의를 둘 수 있으며 조직과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제32~33조)

자료 : <http://www8.cao.go.jp/syokuiku/kihon.html> 를 발췌 정리